

■ 치과 칼럼

심미치료의 종류와 방법

심미치료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치아는 저작이나 발음 등의 기능을 위해 존재하지만, 말을 하거나 웃을 때 특히 잘 보이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치아의 심미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가지런하고 하얀 치아를 선호합니다.

우리가 웃을 때 보여지는 치아들의 부분을 'Esthetic Zone(심미 존)'이라고 하는데 보통 앞니의 송곳니 바로 뒤 치아부터 반대편에 있는 치아들이 해당됩니다. 이 8개의 치아의 모양과 배열 그리고 이로 인한 치아 끝의 라인들이 심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듯 치아도 각각 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로 부러지거나 파절되고 이로 인해 웃을 때 입을 가리거나 자신감마저 잃어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아 심미치료를 통해 자신감 회복과 긍정적인 마인드 회복이라는 심리치료의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레진치료만으로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벌여지거나 파절된 치아를 복구하는 간단한 치료부터 부분 교정과 보철 또는 신경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 복합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양한 치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고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진치료는 충치치료 등에 사용되는 레진을 이용하여 앞니가 살짝 벌여졌거나 균열이 간 경우 치아모양에 맞추어 변형과 제작을 가능하게 하여, 치아 삭제량을 적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심미치료와 비교하여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다른 재료와 비교하여 잘 떨어지고, 치아와 접촉된 부분의 변색(심하게는 까맣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진 자체에 착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미치료 하면 많이 떠올리는 라미네이트는 치아의 앞면을 최소로 삭제하고 치아 모양을 본뜬 얇은 판을 부착하는 시술입니다. 소모되는 시간에 비하여 변화가 커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앞서 레진과 비교하였을 때 강도와 심미성이 우수한 치료입니다. 그러나 라미네이트 두께가 얇고 치아의 앞쪽만 부착이 되기 때문에 빠지거나 파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운 보철시술입니다. 위의 시술들과 비교해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위치와 각도, 형태 등을 조절하기에 더 좋습니다. 또한 레진과 라미네이트와 비교하였을 때 강도가 가장 우수합니다. 많은 치아를 교정없이 빠른 시기 안에 치료할 수 있는게 보철시술입니다. 하지만 치아 삭제량이 많고 이로 인해 신경치료까지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이 가진 장점과 단점들이 있기에 심미치료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이 받는 치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 하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셔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웃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린다 치대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 법률 칼럼

투자비자 (E-2)

투자비자 (E-2)는 미국에 일정액의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미국에 투자한 사업에서 수입이 창출되어 미국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고 또 비자 취득인은 자녀들 미국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한국분들이 선호하시는 비자입니다.

투자비자 (E-2)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만 체류할 것을 허가하는 비자 (체류 신분)이지 영주권이 아닙니다.

■ E-2 신청 시 고려 사항

첫 번째 고려사항은 한국 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비자 수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만 변경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투자자는 한국 내 미국대사관에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투자자 (E-2)로 신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 예를 들어 학생 (F-1)이나 취업 (H-1-B)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E-2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는 E-2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투자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체류 신분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방문이나 해외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누구를 E-2 메인 신분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E-2 비자 취득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취업이 취업이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내 취업 가능성이 사람에 따라 E-2 배우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투자할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금액이 얼



마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상당한 (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투자 금액은 영사나 이민관이 투자비자 신청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 상당한 투자란 사업체의 적정 시장가격 정도의 투자액을 의미하며 새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투자액을 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고려 사항은 투자할 사업체에 대한 사업성입니다. 투자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는 처음 투자비자를 받은 후 현재 연장 시점까지 비즈니스 실적을 보여주는 세금보고서를 이민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계속 적자 상태라면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의 사업성을 잘 고려하여 그 사업체가 미래에 충분한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체 인지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E-2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업체의 위치를 선정할 때 자녀가 있다면 학군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www.myevergreenschool.com

“에버그린 프리스쿨 임니다”

GOD IS LOVE 1JOHN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